
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행위 또는 사유	해당 법 조문	처분내용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	법 제125조제5항제 1호	조종자증명 취소
2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	법 제125조제5항제 2호	가. 벌금 100만원 미만 : 효력정지 30일 나.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: 효력정지 50일 다. 벌금 200만원 이상 : 조종자 증명 취소
3.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.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.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.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	법 제125조제5항제 3호	조종자증명 취소 효력 정지 90일 효력 정지 30일
4.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.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나.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다.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	법 제125조제5항제 3호	효력 정지 180일 효력 정지 90일 효력 정지 30일
5. 법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	법 제125조제5항제 3호의2	조종자 증명 취소
6.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	법 제125조제5항제 3호의3	조종자 증명 취소

<p>선한 경우</p> <p>가.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</p> <p>나.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</p>		
<p>7.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</p>	<p>법 제125조제5항제4호</p>	<p>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/p> <p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/p> <p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</p>
<p>8.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</p>	<p>법 제125조제5항제5호</p>	<p>가. 주류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혈중알콜농도 0.02퍼센트 이상 0.06퍼센트 미만: 효력 정지 60일 - 혈중알콜농도 0.06퍼센트 이상 0.09퍼센트 미만: 효력 정지 120일 - 혈중알콜농도 0.09퍼센트 이상: 효력 정지 180일 <p>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-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 -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
<p>9.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</p>	<p>법 제125조제5항제6호</p>	<p>가. 주류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혈중알콜농도 0.02퍼센트 이상 0.06퍼센트 미만: 효력 정지 60일 - 혈중알콜농도 0.06퍼센트 이상 0.09퍼센트 미만: 효력 정지 120일 - 혈중알콜농도 0.09퍼센트 이상: 효력 정지 180일 <p>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

10.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25조제5항제 7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 -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 조종자증명 취소
11.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	법 제125조제5항제 8호	조종자증명 취소

비고

1. 처분의 구분

- 가. 조종자증명 취소: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.
- 나. 효력 정지: 일정기간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.

2. 1개의 위반행위나 사유가 2개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

3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4. 다음 각 목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가. 가중할 수 있는 경우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과거 효력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

나. 감경할 수 있는 경우
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처음 발생한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